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14 선고 2022가합3413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엠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세형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민

담당변호사 김국종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1. 가. 피고 B과 D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1. 1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 및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1) D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E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고, 2) D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F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2. 가. 피고 B과 G 사이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1. 13. 체결된 주식양도계약 및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1) G에게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E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고, 2) G에게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F에 위 주식 양도의 통지를 하라.

3. 가. 피고 C와 G 사이에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20. 11. 9. 체결된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 G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11. 3. D, G 및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8480호로 「D, G 및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8. 위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하였다.

2) G는 2010. 11. 19. 위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0. 12. 4.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이라 한다).

3) D, I이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456호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위

법원은 2011. 4. 19. 「D, I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0원 및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1. 6. 11. 확정되었다.

나. D, G와 피고 B의 주식양도계약

1) D은 피고 B에게, 2020. 11. 9.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을, 2020. 11. 13.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을 각 양도하였다.

2) G는 피고 B에게, 2020. 11. 9.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을, 2020. 11. 13.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을 각 양도하였다.

다. G와 피고 C의 주식양도계약 등

1) G는 2020. 11. 9. 피고 C에게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그 액면가인 63,000,000원(= 12,600주 × 1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

2) 피고 C는 2022. 6. 28.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2 각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B에 대한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G에 대하여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가지고, 위 채권은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 갑 제8,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7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지1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주식 외에 다른 특별한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각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액면가 합계 210,000,000원[=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주식 90,000,000원 +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주식 57,000,000원 +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주식(이 사건 주식) 63,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주식을 피고 C에게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G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2) 피고 C는 '제부 J의 소개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J의 소개로 처분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은 주주가 D, G 및 K 등 3인에 불과한 주식회사 F의 비상장주식인데, 피고 C가 이러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동기나 경위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J의 소개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 그대로 매수하였다'라는 피고 C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 C는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63,000,000원을 수회에 걸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거래관념상 이례적이고,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대금 중 12,000,000원은 J이 대여해주었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C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을 다시 반환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3) 가액배상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C가 이 사건 주식을 2020. 11. 9.

63,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변론종결일 현재 가액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 C의 가액배상 범위는 63,000,0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C와 G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박준범, 판사 김병일

별지1

1. 가. 주식종목(발행회사) : 주식회사 E
나. 주식종류 : 보통주
다. 주주명의 : B
라. 주 식 주 : 180,000주
마. 가 액 : 90,000,000원
2. 가. 주식종목(발행회사) : 주식회사 F
나. 주식종류 : 보통주
다. 주주명의 : B
라. 주 식 주 : 18,000주
마. 가 액 : 90,000,000원
3. 가. 주식종목(발행회사) : 주식회사 E
나. 주식종류 : 보통주
다. 주주명의 : B
라. 주 식 주 : 180,000주
마. 가 액 : 90,000,000원
4. 가. 주식종목(발행회사) : 주식회사 F
나. 주식종류 : 보통주
다. 주주명의 : B
라. 주 식 주 : 11,400주
마. 가 액 : 57,000,000원
5. 가. 주식종목(발행회사) : 주식회사 F
나. 주식종류 : 보통주
다. 주주명의 : C
라. 주 식 주 : 12,600주
마. 가 액 : 63,000,000원. 끝.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소외 G, D 에 대한 투자금반환청구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B 은 소외 G, D 이 ㈜E 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합계 360,000주(소외 G, D 각 18만 주) 및 소외 G, D 이 ㈜F 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2,000주(소외 G 24,000주, D 18,000주) 중 29,400주를,

피고 C 는 소외 G, D 이 ㈜F 의 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 42,000주(소외 G 24,000주, D 18,000주) 중 12,600주를 매수한 사람입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원고는 2010. 11. 8. 소외 G, D 을 상대로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전8480 투자금반환 등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소외 G 에 대해 750,000,000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0. 11. 19. 소외 G 에게 송달되어 2010. 12. 4. 확정되었습니다 (갑 제1호증 지급명령 참조).

한편, 소외 D은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승소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456)이 선고되어 이 판결은 2011. 6. 11. 확정되었습니다(갑 제2호증 판결 참조).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 및 판결을 기초로 소외인들이 ㉞E, ㉞F, ㉞L에 대하여 가지는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0타제67199)을 받고 특별현금화(양도) 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21타제57350)을 신청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소외 G, D은 피고들에게 보유주식 전부를 양도하였고, 위 소외 G, D은 양도 당시 별지목록 기재 주식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참조_은평세무서]

<2021년 주식 및 변동상황일람서>

법원명	주주성명	기초(재분할)	양도(양도)	기말(재분할)	수량 액면가액
(주) F	D	18,000(30%)	18,000	0(0%)	9,000
	G	21,000(40%)	21,000	0(0%)	
(주) E	D	180,000(30%)	180,000	0(0%)	900
	G	180,000(30%)	180,000	0(0%)	

다. 원고는 소외 G(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차8480 투자금 반환, 2010. 12. 4. 확정)와 D(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합456 투자금반환 2011. 6. 11. 확정)에 대하여 각 투자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인들에 대한 투자금반환 채권은 이 사건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각 법인의 설립일이 투자

금반환채권 발생 이후이므로 배당계약은 그 이후 입니다)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채무자의 무자력

채권자는 소외 G, D에 대한 재산명시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카명2454) 사건에서 소외인들은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아무런 재산이 없다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소외 G, D은 이 사건 주식보유 사실이 있었음에도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0호증 각 참조).

또한, 원고는 2016. 12. 26. 및 2020. 9. 17.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12456, 2020타채61587) 사건에서도 소외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원고는 채권의 만족을 전혀 일지 못하였으며, 이후 원고와 소외 (주)E 및 (주)F 사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00979 추심금 소송에서 (주)E는 대표이사인 소외 D에게, (주)F는 당시 대표이사이던 G에게 급여나 퇴직금, 이익분배 등 어떠한 금전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았을 때 소외인들은 전혀 소득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갑 제6호증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이루어진 2020년경 별지목록 기재 주식이 소외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소외인들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대법원은 채무자의 사해 의사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등 참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인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 및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에 의해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외 G, D의 사해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청구취지 확장

원고는 소외인들이 피고들과 이 사건 주식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대금이나 주식 수량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은평세무서의 과세정보재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이 사건 소송목적물 가액을 합계 390,000,000원(B 327,000,000원, C 63,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합니다(갑 제11호증 주식등 변동상황명세(2022. 2. 23.자 은평세무서) 및 별지목록 각 참조).

한편, 갑 제11호증 주식등 변동상황명세(2022. 2. 23.자 은평세무서)에 ㈜E의 주당액면가를 5,000원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E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1주의 금액 500원으로 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5. 결론

결국,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소외 G, D에게 별지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추가되는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사해행위의 특정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D는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 별지목록 기재 1항, 2항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소외 G 역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에게는 별지목록 기재 3항, 4항의 주식을, 피고 C에게는 별지목록 기재 5항의 주식을 각 양도하였습니다(갑 제11호증 과세정보회신서, 피고 C의 2022. 9. 28.자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D와 G에겐 이 사건 각 주식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갑 제8호증, 제9호증 각 재산목록 참조),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해 D와 G는 무자력에 이르거나 무자력이 심화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

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2. 피고 C에 대한 가액배상 청구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주식양도계약을 취소하고 그 주식의 반환 및 명의개서를 위한 통지를 명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원금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 C의 2022. 9. 28.자 준비서면에 따르면 피고 C는 2020. 11.경 G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 12,600주를 63,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22. 6.경에 매도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 C의 원금반환(주식양도)은 이미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여 가액배상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 C가 주장하는 매수비용 63,000,000원은 당해 주식의 가액과 동일한데($63,000,000\text{원} = 12,600\text{주} \times 5000\text{원}$, 갑 제11호증 과세정보 회신서 참조), 원고의 G에 대한 채권은 750,000,000원 이상이어서 원고의 채권액이 당해 책임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므로 63,000,000원 전부의 배상을 청구하는 바입니다(2022. 5. 25.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당시에도 소송상 청구가액은 위와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청구취지 확정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3. 나머지 청구원인

원고는 위 1항, 2항을 추가하는 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은 기존 청구원인의 내용으로 같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청구원인

1. 이 사건 사해행위의 특징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소비하기 쉽게 현금화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 공동담보 부족상태를 실질적으로 심화시킨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참조).

은행사무서의 2022. 2. 23.자 과세정보회신서 및 2023. 3. 22.자 과세정보회신서, '피고 C는 G로부터 (※) F의 주식 12,600주를 양도받았다'는 피고 C의 진술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원고의 채무자인 소의 D은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3.에는 피고 B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180,000주(별지목록 기재 제1항)를, 2020. 11. 9.에는 피고 B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 18,000주(별지목록 기재 제2항)를 양도하였고,

마찬가지로 원고의 채무자인 소의 G 역시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3.에는 피고 B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 180,000주(별지목록 기재 제3항)를, 2020. 11. 9.에는 피고 B에게 주식회사 F의 주식 11,400주(별지목록 기재 제4항)를, 피고 C에게 동 회사 주식 12,600주(별지목록 기재 5항)를 각 양도하였습니다(은행사무서의 2022. 2. 23.자 과세정보 회신서 및

2023. 3. 22.자 과세정보 회신서, 피고 C의 2022. 9. 28.자 준비서면 참조).

2. 채무자들의 무자력 상태에 관한 보충

또한 법원행정처의 2023. 3. 21.자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D와 G에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주식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소극재산)만 하더라도 750,000,000원 이상이므로(갑 제1호증 지급명령, 갑 제2호증 판결문 참조),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으로 인해 D와 G는 무자력에 이르거나 무자력이 심화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3. 나머지 청구원인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해행위를 특정하고 원고의 채무자인 D, G의 무자력에 대한 보충설명을 추가하는 외에 나머지 청구원인은 기존 청구원인의 내용으로 같음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1) 원고의 2023. 3. 8.자, 2023. 4. 3.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주식의 발행회사가 '주식회사 H'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주식회사 E'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